

# 유가 생태윤리의 전개 방향에 관한 試論

황갑연 (전북대)

## 1. 들어가면서

순수 도덕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생태윤리를 비롯한 생명윤리 등의 응용윤리는 처음 시작부터 윤리학의 기본적 성격에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도덕은 일반적으로 자유의지와 이성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류라는 존재 범주에서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용윤리의 출현 배경에는 인류와 자연의 영속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산업문명의 극단적 확장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자연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인류는 영속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심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환경생태윤리는 이러한 위기로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요청된 학술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위성을 긍정한다면 도덕과 윤리문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예설하고 있는 자유와 이성의 능력을 갖춘 존재만을 도덕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환경윤리학이 국내에 소개되고, 자연적 존재에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서구의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의 대안을 동양의 전통철학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내의 학술계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儒佛道의 세계관과 자연관을 기초로 원융화해의 환경윤리관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생태윤리의 여러 연구 양상에 대하여 상당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필자도 환경과 생태 그리고 생명윤리에 관한 논문 4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지만, 주요 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유가의 이념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필자가 규정한 유가의 이념에 대한 형이상학적 근거 제시였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다른 연구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생태윤리가 인류를 비롯한 자연 전체의 영속발전이라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면 다른 어떤 윤리영역보다도 더욱 강한 실천을 수반해야 하고, 선악에 대한 판단(실천 방향)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유가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근거로 윤리의 영역을 자연까지 확장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형이상학 혹은 심성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면 환경생태윤리의 출현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필자는 오늘의 담론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유가의 환경생태윤리의 대강을 성찰하면서 보다 실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이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유가의 환경생태윤리는 실천력 수반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필자는 첫 번째로 ‘현재 인류의 영속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유가철학 연구자들의 진단은 정확한가’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한다. 박이문과 장희익 및 진교훈을 비롯한 국내의 유력한 환경생태윤리 연구자들은 환경생태 위기의 이념적 원인을 인간과 자연을 이원적 대립관계로 정립하고 있는 서양의 세계관에서 찾고 있다. 만일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라면 儒佛道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양의 자연관과 세계관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자연적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왜냐하면 세계관과 자연관이 개인 혹은 다수 인간의 행동방식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인간 행동의 지속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경보존과 생태계의 온전한 유지에 주관적 인식이 1차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모든 환경문제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 대립 구조로 인식하는 서구의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의 유일한 대안이 동양의 自他不二 혹은 物我一體의 원융적 세계관인가?’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자타 혹은 물아일체의 원융적 세계관에 익숙한 인도와 중국의 환경생태는 서양의 현재보다 훨씬 양호해야 하는데, 그런가?

둘째, 유가 환경생태윤리 이념 규정에 관한 논의이다.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이념은 인간중심주의와 탈(비)인간중심주의이다. 인간중심주의와 탈(비)인간중심주의 구분의 경계는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하여 내재적 가치를 긍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오로지 인간만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행복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즉 자연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이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하여 고통과 행복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동물,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물권리주의나 생명중심주의의 환경윤리가 있고, 또 각각의 생명체를 유기적 혹은 전일적 관점으로 인식하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생태중심적 환경윤리가 있게 된다. 비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에서도 도덕실천 고려의 대상 범위에 광협의 차이는 있지만, 비인간중심적 환경윤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덕실천 고려 대상의 권리 소유와 의무 인식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식적 평가자와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자연적 존재의 내재적 가치 개념에 초점을 둔다. 필자는 방대한 유가의 경전에는 이 두 가지 대립적 이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였다. 『논어』와 『맹자』 그리고 『중용』과 주자·양명의 철학에도 두 가지 관점은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또 ‘중심’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미로 규정 가능하다. 하나는 권리의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역할의 중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무’의 중심이다. 어느 쪽에 의미를 두는가에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중심주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유가의 환경생태윤리에서 형이상학적 이론이 얼마나 강한 실천을 수반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다. 필자는 유가의 환경생태윤리에서 내재적 가치의 동일성을 『중용』의 天命之謂性과 주자의 理同氣異 그리고 物物具有一太極에서 찾았다. 또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一氣의 流通에서 찾았다. 필자가 거론한 문헌 근거는 인간과 자연을 수평적 관계로 규정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근거이다. 우리는 딸랑 이상의 근거만으로 인간과

자연적 존재의 가치를 과감하게 수평적 혹은 평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상식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시궁창속의 지렁이와 당신이 동일한 존재가치를 소유하였다고 지적하면 그의 반응은 어떨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을 과감하게 버리고서 천지만물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면서 萬物一體 사유에 동참할 것인가?

사실 자연적 존재를 인간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인류이고, 수평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인류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비록 인간과 자연적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타인이 견지하고 있는 차별적 인식을 비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재적 가치의 평등성과 차이성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자연적 존재의 위상과 가치에 대하여 비록 서로 다른 인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얼마든지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필자는 환경파괴와 생태계위기의 근본원인으로서 이상에서 거론한 세계관과 자연관 이외에 경제발전과 환경생태보호의 두 축의 균형성 상실을 들고자 한다. 인류의 경제발전은 반드시 생태환경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자원을 기초로 하지 않음이 없고, 인류의 어떤 활동(행복 실현) 역시 이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지 않음이 없다. 인류와 자연의 영속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경제발전(행복 실현) 그리고 생태환경의 온전성이 상호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생태환경이 열악하면 경제발전의 속도를 줄이거나 생태환경에 최소한의 충격만을 주는 물질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태환경의 회복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은 이것과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은 경제발전에만 진력하였을 뿐이고, 지구환경보호의 국가적 참여에서는 오히려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환경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비협조가 많았다.

필자는 현재의 환경생태 위기 극복은 먼저 인류와 자연의 영속발전이라는 공통적 이념에서 환경과 경제발전이 서로 포용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찾아 양자를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과 환경생태의 관계를 대립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상호 의존적 호응의 관계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류 경제발전이 자원의 사용은 불가피한 조건이지만, 자원의 사용량이 생태환경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한도를 지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이용과 함께 보호와 육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중용』 「30장」의 “만물은 함께 생육하지만 서로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으며, 도리는 병행하지만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萬物並育而不相害, 道並行而不相悖)는 곧 이를 강조한 것이다.

다섯째는 유가의 도덕철학에서 자연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실천성을 수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은 공자의 仁과 맹자의 心性에 찾고자 한다. 주자는 비록 『중용』의 天命之謂性을 근거로 理同氣異와 物物具有一太極이라는 만물의 평등성 이념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형이상학적 사변의 소산물일 뿐 구체적인 심리적 사실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이념이 개인의 행동 방식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화해가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갖추어진 도덕적 선의지(심리적 사실)의 자발적인 요구이고, 그것에 대한 계발적 예시를 심리적 사실을 근거로 충분히 해설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어떤 생태환경윤리 이념보다도 강한

실천성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仁과 맹자의 심성 그리고 양명의 양지는 도덕가치(좋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희열의 반응과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도덕의지이다. 혹자는 이를 요청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공자와 맹자 그리고 양명은 이를 심리적 사실로 해설한다. 仁의 실천성은 不安不忍之心이 시작이고, 맹자에서는 四端之心이 시작이다. 不安不忍과 四端之心은 단순한 심리적 사실이 아니라 도덕가치에 대한 자각이 전제된 도덕정감이다. 이 도덕정감은 필연적으로 대상과 감응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潤物 활동을 하는데, 이것의 궁극 경지가 天地萬物爲一體이다.

仁과 心性の 潤物 활동 범위는 기본적으로 우주이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親親仁民愛物의 차서를 긍정하기 때문에 인류와 자연적 존재를 수평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이념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공자와 맹자는 親親과 仁民에만 그치지 않고 愛物까지 확장한다. 物我一體와 萬物一體가 바로 愛物 실현의 종극적인 단계이다. 또 萬物一體와 物我一體에서 一體는 단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통한 만물의 존재가치 완성(회복과 유지)이라는 潤物이다. 우리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에게만 측은지심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 그리고 대가 끊긴 왕조, 나아가 어미의 보호를 잃은 짐승과 훼손된 자연에 대해서는 不忍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潤物(興滅國, 繼絕世)하고자 하는 마음 표현의 계발적 예시이다. 양명은 이러한 潤物을 ‘사사물물로 하여금 올바른 위치를 얻게 한다’ (使事事物物得其正所)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우환의식 고취이다. 우환은 어떤 난관에 부딪쳐 아직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드는 심리적 걱정이다. 殷의 湯王이 夏의 桀王을 토벌할 때 천명설을 내세웠다면, 周는 殷의 천명을 天命靡常說로 바꾸고, 왕권 역시 神授說에서 逐鹿說로 전환한다. 축록설은 자연스럽게 우환의식을 수반하는데, 우환의식은 주나라의 탄생과 관련 있지만, 그보다도 周의 예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공자의 의도와 관련 있다. 또 우환의식은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민심의 이반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다. 우환은 걱정의 마음이다. 즉 어떤 일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심리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근신과 조심이라는 도덕적 자각이다. 이것이 바로 敬이다. 敬의 본래 의미는 자기를 단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려는 심리 상태이지만, 생태환경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다. 인류의 경제발전과 행복실현 욕구 그리고 자원의 한계라는 두 대척점에서 유가철학자의 심리는 바로 우환 그 자체일 것이다. 仁과 심성 그리고 양지가 요청이 아닌 도덕적 심리 사실인 것처럼 우환 역시 심리적 사실이다. 황폐화된 자연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직면해서 드는 우환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도덕적 자각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인류와 자연이 화해공조하면서 영속발전할 수 있는 公識을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3. 유가 생태환경윤리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試論

인간과 자연의 영속발전에 위기가 없다면 생태환경윤리의 출현은 없었을 것이다. 생태환경윤리는 인류의 영속발전에 대한 위기의식, 즉 우환의식의 산물이다. 우환의

절박성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다. 생태환경윤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수월한 실천을 수반할 수 있는가’이다. 실천은 반드시 선을 지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가의 생태환경윤리는 인간과 자연생태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선악 평가의 원칙과 구조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서구의 생태환경윤리에서는 행위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가철학의 이념에도 인간과 자연이 화해공생을 이루면서 영속발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

인류와 자연의 영속발전은 생태환경윤리의 강령이자 목적이다. 사실 인간과 자연의 영속발전 문제는 환경윤리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탐구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분과학문의 핵심 이념에는 이 문제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유가철학에서는 천지만물에서 인간의 지위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천지만물을 인간의 생존만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않는다. 공자를 시작으로 유가철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을 천도의 자아실현으로 인식한다. 비록 식물이 자연의 유기질을 흡수하고,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인간이 동식물을 먹으면서 생명의 연속을 유지하지만, 이는 자연생태계의 구성분자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곳에는 자유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도덕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자각이라는 반성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타 존재가 올바른 위치를 얻지 못함에 대하여 不忍의 도덕정감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연민의 회포가 바로 인간과 자연적 존재의 영속발전에 대한 도덕정감이다.

인간과 자연의 영속발전에 대한 유가철학자의 회포는 『역경』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역경』에서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개체생명의 발생과 활동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영역을 우주 전체로까지 확대하여 생명의 근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과 개체생명과 연관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역경』의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된다” (一陰一陽之謂道)「繫辭上」와 “천지의 위대한 덕은 생생이다” (天地大德曰生)「繫辭下」 그리고 “강과 유가 서로 추동하여 변화가 생긴다” (剛柔相推而變化)「繫辭上」와 “생생하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生生之謂易)「繫辭上」 등의 표현은 바로 유가철학에서 우주전체를 하나의 고정적 정태물로 인식하지 않고 동태적 생장의 연속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가철학에서는 천지의 덕을 生意로 규정하고서, 이에 대하여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유는 『역경』의 “생도를 계승하는 것을 선이라 한다” (繼之者善)「繫辭上」는 관점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일시적 혹은 부분적 공간에서 생의 단절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영속적 혹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연의 이익에 대한 배려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유가철학에는 恕道라는 도덕행위 원칙이 있는데, 이는 자연적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념이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己所不欲 勿施於人)「先進」고 하였다. 이것이 ‘恕’의 기본적 의미이다. 자연적 존재의 의식판단(동물)이 비록 인간처럼 합리성은 결여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연적 존재가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은 행위자가 충분히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피행위자의 입장에 접근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의

생존권 보존 욕구를 자연적 존재에게도 적용하여 그들의 생존권 수호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타자 역시 원할 것이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실현을 도와주라’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雍也」는 ‘恕’의 적극적인 의미이다.

또 최소 파괴(고통)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간의 생존 방식은 다양하다. 生機的 본능에 의한 살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 외에 문화적 활동, 심지어 스포츠 오락 등 인간생존의 비기본적 활동에서도 자연과 충돌한다. 필자는 비기본적 활동에 대해서 과연 양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인간 생존의 기본적 혹은 비기본적 활동에서도 최소 파괴 혹은 고통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배려의 원칙에서 이미 해설한 바와 같이 동식물의 의식판단에 비록 합리성 결여, 심지어 합리성이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도덕의지는 ‘推己及物’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행위자의 입장에 접근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설령 인간의 생리적 본능에 의하여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고, 주거와 철도 부설 그리고 공공시설의 확충에서도 항상 ‘推己及物’ 하면서 자연의 파괴와 생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경우에 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중’의 단절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이상의 원칙 외에도 상세한 절목들이 있지만, 크게는 영속발전과 화해공생의 이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려의 원칙에 큰 결함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전통유가철학의 도덕론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맹자와 육왕계통의 ‘도덕규범에 대한 의지의 입법성을 긍정하는 계통’ 이고, 다른 하나는 ‘순자와 주자의 도덕규범에 대한 의지의 준법성을 긍정하는 계통’ 이다. 의지가 입법의 주체라면 의지가 곧 법칙 자신이다. 따라서 시비선악의 표준을 의지 밖에서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가 준법의 주체라면 의지가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을지라도 법칙 자체가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지는 법칙을 인식하여 법칙에 의거하여(준법) 실현할 뿐이다. 필자는 이상의 틀을 양명의 치양지와 주자의 격물궁리에 적용하여 유가의 생태환경윤리 평가의 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치양지의 방법에 관하여 논의해보자. 치양지의 전제조건은 양지의 知善知惡 혹은 知是知非의 완전성이다. 맹자를 비롯한 심학자들은 도덕적 선악과 시비 판단에 대한 자결 능력의 선천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갈등에서 무엇이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지향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인간과 자연의 영속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양지의 선악 판단은 단지 의념의 지향성에 관한 판단일 뿐 사실적 사건에 관한 지식과는 무관하다” 고 질문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다. 즉 환경윤리 전문가가 환경이라는 사실적 전문지식을 전문가에 버금가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전 지식을 구비하지 못한 윤리적 판단이라면 실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개인적 판단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왕양명은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사물 그리고 그것의 원리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인은 사람들에게 잘 묻는다’ (天下事物,

如名物度數, 草木禽獸之類, 不勝其煩. 聖人須是本體明了, 亦何緣盡知得? 但不必知的, 自不消去知. 其所當知的, 聖人自能問人. 如子入太廟, 每事問之類)고 하면서 공자의 “태묘에 들어갈 때는 매사를 물었다”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이곳에서 왕양명이 말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인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잘 묻는다”는 태도는 전문적 지식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구비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의 갈등에서 득실을 고려하고, 자신의 도덕적 양지에 비추어 무엇이 최상의 선을 지향하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당히 간결하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검비하고 있고, 득실에 관한 고려 역시 치밀한 분석이 전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양지의 몫이어서 양지의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 사업에서 정부기관의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전문가 모두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 모두 인간과 자연의 영속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양지의 판단에 비춰보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판단 모두를 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의 형상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어느 일방이 자신의 양지 판단이 불순하다는 점을 긍정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음은 격물궁리의 방법이다. 순자와 주자철학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관건적인 것은 맹자와 왕양명처럼 일념간의 자각성찰을 통하여 시비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후천적인 積習과 積累를 통하여 理에 대한 지식을 양과 질적으로 확장 혹은 정묘하게 접근하는 점교적인 방식을 취한다.

순자는 “예는 법의 대분이고, 류의 강기이다”(禮者, 法之大分, 類之綱紀也)라고 하였다. 순자철학에는 法과 類 그리고 統이라는 3 단계가 존재한다. ‘법’은 성문화된 현전의 법규·조례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문화된 조리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순자는 비록 성문화되어 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동류의 사건들을 추리하고 유비해보면, 반드시 동류의 사건을 하나로 통괄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류’이다. ‘법’을 안다는 것은 현상만을 안다는 것이고, ‘류’를 안다는 것은 현상의 소이연을 안다(明類)는 것이다. 그러나 明類는 동류의 사건에만 유효할 뿐 그것과 다른 ‘類’의 사건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類’를 통괄할 수 있는 지식의 조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統類, 즉 綱紀에 대한 인식이다. 주자의 격물치지 인식론에서도 3단계의 서로 다른 층차의 지식이 존재한다. 器(현상)와 分殊之理 그리고 統體之理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사물(器)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이고, 그것의 도리(分殊之理)에 대한 인식이 그 다음이며, 마지막이 모든 분수지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체지리에 대한 인식(활연관통)이다.

이 방식은 치양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특수한 사례에 대한 윤리판단의 분석을 통하여 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을 설정한다. 이것이 바로 순자에서는 ‘法’이고, 주자에서는 ‘器’에 대한 지식이다. 그 다음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유사한 유형들을 종합하여 그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재정립한다. ‘類’에 대한 순자의 인식과 ‘分殊之理’에 대한 주자의 인식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이 모든 사례와 ‘流’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을 도출한다. 이것이 통류에 대한 인식이고, 활연관통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치양지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 방식은 개별적인 사안을 해결하는데는 매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치양지처럼 개인의 도덕의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분석을 경유하여 얻은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인식주체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순수성(居敬)만 유지한다면 인식주체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여러 거울이 있지만, 거울의 상태가 정결하다면 각각의 거울에 비친 실상이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얻어진 지식을 종합하여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비추론 방식을 통하여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미 얻어진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유효하게 적용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례의 분석에 대한 심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즉 居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유사성이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천을 준설하는 행위를 보자. 흑자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댐 건설이 목적이라면 동일한 하천 준설 행위이지만, 유사성은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統類와 統體之理에 관한 지식에 있다. 원래 주자의 활연관통에는 약간의 신비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자의 統類처럼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순자는 禮가 성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禮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성현이 연속적으로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환경 갈등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은 도출하기는 어렵다.